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1006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새마을금고  
                                     김해시 [REDACTED]  
                                     대표자 이사장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경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변호사 김정석  
피고, 항소인                    김○○ ( [REDACTED] - [REDACTED] )  
                                     김해시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성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단153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833,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9. 21. 피고와 사이에, 대출개시일을 2007. 10. 2., 대출만료일을 2012. 10. 2., 이자율을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로 하여 익월에 지급하되,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41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2007. 10. 2.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김해시 ○○동 \*\*\*\*-\* ○○빌딩 \*\*\*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07. 10. 2.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4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두레전표와 입금된 돈을 피고의 계좌에서 재차 출금한다는 내용의 두레전표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을 해줄 무렵, ○○산업개발, 배○○ 등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을 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대출금 410,000,000원을 포함한 대출금 합계 1,880,000,000원을 ○○산업개발에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타 은행 송금 한도액 제한(1일 1,000,000,000원, 1회 100,000,000원)에 따라 1,000,000,000원을 10회로 나누어 ○○산업개발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80,000,000원은 이를 액면금으로 하는 농협수표를 발급받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

5) 피고는 2009. 3. 14.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2009. 4. 14.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09. 5.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2009. 3. 14.부터 2009. 5. 13.까지 변동금리는 연 8%이다.

6)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2009타경20105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0. 5. 26. 그 경매절차에서 330,060,990원을 배당받았다.

##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0. 5. 26. 배당받은 330,060,990원은 민법 제479조가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2009. 3. 14.부터 2009. 5. 13.까지의 약정이자 5,481,644원(= 410,000,000원 × 8% × 61일/365일, 원 미만 올림, 이하 같다),

2009. 5. 14.부터 2010. 5. 26.까지의 지연손해금 93,412,603원(= 410,000,000원 × 22% × 378일/365일)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231,166,743원이 원금 41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금은 178,833,257원(= 410,000,000원 -231,166,74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나머지 대출원금 178,833,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실제 채무자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전○○과 원고의 직원인 남○○ 상무가 공모하여 ○○산업개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여 초과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나. 판 단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7357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7, 21 내지 24, 26, 28, 29, 32호증, 을 제50호증, 을 제51호증의 3, 4, 을 제52 내지 58호증, 을 제60, 71호증, 을 제72호증의 2, 을 제73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남○○, 박○○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산업개발은 2007. 9.경 김해시 ○○동 \*\*\*\*-\*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았다. 원고의 상무 남○○는 ○○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전 ○○의 부탁을 받고, 2007. 8. 10.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위 ○○빌딩 \*\*\*호 내지 \*\*\*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위 ○○빌딩 \*\*\*호 내지 \*\*\*호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한편, 전○○은 피고에게 마치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아 주면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을 것이고 피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는 2007. 9. 21. 원고의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그 밖에 대출금의 수령에 필요한 두레전표 등을 관계서류에 서명·날인 하였다.

위 ○○빌딩의 부지인 김해시 ○○동 \*\*\*\*-\* 주차장 2,511.9㎡에는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 또는 지상권자로 하는 다수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0. 2. 피고 등에 대하여 함께

1,88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위 각 제한물권은 말소되었고, 위 ○○빌딩의 부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일괄하여 마쳐졌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등기비용은 ○○산업개발이 부담하였고, 피고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도 ○○산업개발이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07. 9. 21. 피고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그 밖에 대출금의 수령에 필요한 두레전표 등 관계서류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채무자가 될 의사임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금의 지급 경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실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대출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동의하에 분양자인 ○○산업개발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인식 아래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가 ○○산업개발에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한 것이고, 그 대출금을 ○○산업개발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으며, 그 대출 원리금을 ○○산업개발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개발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산업개발에만 귀속시키고 대출명의인인 피고에게는 귀속시키지 아니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 밖에 을 제30, 34호증, 을 제35호증의 1, 2, 을 제36, 3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8, 39, 40호증, 을 제41호증의 1, 2, 을 제42 내지 49호증, 을 제51호증의 1, 2, 을 제59호증의 1 내지 3, 을 제61 내지 66호증, 을 제67, 68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69호증, 을 제70호증의 1, 2, 을 제7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산업개발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의 적용을 회피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만을 빌려 피고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를 양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8,833,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이재환

                  판사            김영주